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스토킹방지법)



[시행 2023. 7. 18.] [법률 제19216호, 2023. 1. 17., 제정]

여성가족부 (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) 02-2100-6427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・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스토킹"이란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.
- 2. "스토킹행위자"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.
- 3. "피해자"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・운영
- 2. 스토킹 예방・방지를 위한 조사・연구・교육 및 홍보
- 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- 4.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
- 5. 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·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
- 6. 피해자에 대한 보호・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・운영
- 7. 스토킹의 예방・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・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・시행 및 평가
- 8.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 ㆍ 지원 체계의 구축
- 9.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스토킹 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,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스토킹 예방교육 등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,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,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,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④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한다.
 -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6조(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)**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
 - 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 - 3.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 - 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 - 5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 - 6.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
 - 7.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 - 8.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
 -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,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7조(취학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(이하 "피해자등"이라 한다)이「초・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(입학・재입학・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・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・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지원시설의 업무)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
- 2. 피해자등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
- 3.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
- 4.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
- 5.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
- 6.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「법률구조법」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 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
- 7. 수사・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
- 8. 스토킹의 예방 ·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
- 9.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
- 10.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
- 11.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제10조(종사자 등의 자격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4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지원시설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- 제11조(교육의 실시) ①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12조(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)**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3조(경찰관서의 협조) ① 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 관서(지구대・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)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14조(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) 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출입,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·신고자·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비밀 유지의 의무)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**제16조(벌칙)**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17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8조(과태료)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칙 <제19216호,2023. 1. 17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